

1. 개정이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981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 취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및 제10조의4)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등 규정(안 제81조)

다.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정심사 면제 기준 신설(안 제89조)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 심사제도 신설·의무화 및 심사(정기·수시) 시기, 내용 등 구체화(안 제90조의2)

마.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었던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관리·감독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토록 개정(안 제104조)

바.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 요건 개정 및 항공교통관제사 교육 훈련체계 마련(안 제225조)

사.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정의 및 수행방식 개정(안 제230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전

문교육기관 관리·감독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9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 00. ~ 10. 00.) 진행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해당없음(국무조정실, '25.0.0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2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관제업무를 보조하는 허가중계업무 및 비행자료관리업무
2. 접근관제업무 또는 지역관제업무를 보조하는 비행자료관리업무

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26의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비행장관제탑: 법 제2조제5의2호가목에 따른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김포·제주·여수·양양·무안·울산·울진·정석·태안관제탑
2. 접근관제시설: 법 제2조제5의2호나목에 따른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제주·김해접근관제소, 울진울산접근관제실, 여수도착관제실
3. 지역관제시설: 법 제2조제5의2호다목에 따른 지역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인천지역관제소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로 한다.

제8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교통 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정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

가. 비행장관제업무

나. 감시접근관제업무

다. 감시지역관제업무

2. 한정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 제10조의4에 따른 시설

제87조제1항 본문 중 “실시시험”을 “실기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호”를 “제7호의2”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제1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제3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제4호”를 “법 제38조제4항제4호”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3항제1호”를 “법 제38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38조제3항제2호”를 “법 제38조제4항제

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8조제3항제3호”를 “법 제38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8조제3항제5호”를 “법 제38조제4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개시 이후 1년 이내에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2.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과 동일한 업무의 종류 및 수행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에서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훈련 실적 및 업무수행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훈련 실적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법규,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필수 교육훈련의 이수 실적

나.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관제기술, 비상절차 수행능력 등에

대한 업무 역량 평가 결과

2. 업무수행 실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180일까지의 사이에 60시간 이상 관제한 경험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량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정기 심사: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실적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또는 종전 정기 심사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심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수시로 실시

가.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나.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자격증명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중 한정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사람

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수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유효기간은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이내에 정기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량 심사의 세부 평가 항목, 기록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제2항 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5조제7호”를 “법 제35조제7호의2”로, “항공교통관제사”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려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제81조제7항에 따른 유효한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한 사람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10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항공청장”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4조제3항제3호 중 “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

제사 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그 관제사가 소속된”을 “소속”으로 한다.

제180조의 제목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을 “(항공교통관제 업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각각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한다.

제193조 본문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한다.

제225조의 제목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을 “(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공교통관제기관”을 “항공교통관제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으로 한다.

제2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항공교통관제 업무의”를 “자격증명의”로, “항공교통관제기관”을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업무의 한정의”를 “자격증명의 한정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를 위해 별표 12 제8의2호 전문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에 따른 교육훈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체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교육훈련체계를 최초로 마련한 경우

2. 정기검사: 매년 1회

3.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⑤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성 및 기량 유지를 위해 항공기탑승훈련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6조의 제목 “(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등)”을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상 등)”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각각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공교통관제 업무: 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비행장관제업무, 접근

관제업무 및 지역관제업무

제2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교통관제업무”를 “항공교통관제 업무”로 한다.

제230조의 제목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을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허가와 정보 제공”을 “허가를 발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으로 한다.

1. 항공기의 예정된 이동 또는 이에 따른 변동 정보, 각 항공기의 실제 진행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접수
2.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기 상호간 상대적 위치를 결정

제231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3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4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각각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 중 “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4항”을 “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8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교통관제업무와”를 “항공교통관제 업무와”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로 한다.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각각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42조제1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43조제1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44조 전단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45조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항공기가 불법 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해당 항공기가 비상 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하거나 이러한 언급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아니 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닌 한 무선통신에서 비상상황의 성격에 대하여 언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24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각각 “법 제83조제5항”으

로 하고, 같은 항 중 “기상관측기관·항공운송사업자”를 “기상서비스제공기관·항공운송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5항”으로 한다.

제250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7호”를 “법 제35조제7호의2”로, “항공교통 관제사”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제29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지방항공청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교통관제사란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가) 중 “포함한다)으로서 관제실무감독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휘·감독 하에 3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90시간(비행장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란 나)을 삭제하며, 같은 목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 항공 교통 관제 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국토부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의 이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 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별표 12에 따른 직무교육 실무교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휘·감독 하에 3개월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	---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경우 해당 경력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심사 응시경력에 반영된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별표 4 제1호나목 자격 증명 한정란의 자격별란 중 항공 정비사란 다음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 제4호를 삭제한다.

전문항공 교통관제 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응시경력란 중 가)의 요건을 갖춘 사람 나) 응시하고자 하는 한정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별표 12에 따른 직무교육 실무교관의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지휘·감독 하에 다음 기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제81조제7항제1호에 따른 동일한 업무 종류에 대한 한정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최대 100분의 50까지, 다른 업무 종류에 대한 한정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100분의 20까지 경력 요건을 각각 줄여줄 수 있다. 1) 비행장관제업무의 경우 1개월(이 경우 90시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실무경력을 충족 필요) 2) 감시접근관제업무·감시지역관제업무의 경우 3개월(이 경우 180시간 이상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실무경력을 충족 필요)
-------------------	--

별표 5 제1호가목1)의 운송용 조종사란의 비행기·헬리콥터(헬리콥터 자격증명의 학과시험의 경우 계기비행에 관한 범위는 제외한다)란 중 항공기상란의 범위 중 나목 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가목2)의 항공정비사란 다음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항공	비행장관제업무	없음	가.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장 구조 및 배
------	---------	----	------------------------

교통관제 사			치(물리적 특성 및 시각지원시설) 나. 관할 공역 구조 다. 적용 가능한 규칙, 절차 및 정보 출처 라. 항행안전시설 마. 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사용방법 바. 장애물(지형 및 주요 지물) 사. 항공교통의 특성 아. 기상 현상 자. 비상 상황 및 수색구조 계획
	감시접근관제업무 • 감시지역관제업무	없음	가. 관할 공역 구조 나. 적용 가능한 규칙, 절차 및 정보 출처 다. 항행안전시설 라. 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사용방법 마. 장애물(지형 및 주요 지물) 바. 항공교통의 특성과 교통흐름 사. 기상 현상 아. 비상 상황 및 수색구조 계획 자. 적용 가능한 항공교통감시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원리, 사용 및 제한 사항 차. 적절한 지형 회피절차를 포함하여 항공교통관제 감시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별표 5 제1호나목2)의 항공정비사란 다음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문항공교통관제 사	비행장관제업무 · 감시접근관제업무 · 감시지역관제업 무	가.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안전하고 항공 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항공 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판단력 및 수행능력 나. 위협 및 오류관리능력
---------------	---	--

별표 8의 자격증명의 종류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7) 중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을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 등급”으로,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를 “항공기·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한다.

별표 12에 8을 8의1로하고 8의1 다음란에 8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과정 지정기준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초기 교육훈련 과정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초기 교육훈련 과정(이하 초기교육이라 한다)은 공통과정과 한정과정으로 구분한다.

가) 공통과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7항1호에 따른 모든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한정의 공통지식 습득을 위한 학과교육으로 교육대상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과목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법령 및 규정	항공교통관리 관련 규정	항공교통업무, 자격증명 관련 법령 및 제 규정	2	4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안전관리 시스템 일반	2	
공항 및 공역	공항	공항 자료, 활주로, 유도로, 표지 및 표지판, 항공등화, 계기착륙장치, 장애물 제한 표면, 공항 구조	3	6
	공역	공역 및 항공로, 접근관제구역, 비행정보구역	3	
항공기 및 운항	항공기	항공기 운항특성(항공기 식별, 시스템 등)	4	8
	항행	지역항법(RNAV), 성능기반항행(PBN), 항공기 운항 단계별 세부 항행절차	4	
항공기상	항공기상업무	항공기상 분석 및 실무	2	2
항공교통	항공교통관리	항공교통관제, 비행정보업무,	4	24

과목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관리		경보업무		
	관제절차 일반	비행장관제, 접근관제, 지역관제	4	
	분리기준	비행장관제 분리 기준, 감시업무 분리 기준	4	
	통신	무선 통화 기법, 표준 관제 용어	6	
	협조	협조 원칙, 협조 종류	2	
	공중충돌경고장치 및 경고 기능	공중충돌경고장치, 관제장비 경고 기능	2	
	관제 기본 실무 기술	기본 관제 실무 기술	2	
인적요인	인간의 역량	피로, 스트레스, 팀워크	2	4
	인적 오류	인적 오류, 리스크 분석 및 관리	2	
장비 및 시스템	항공교통관제 장비	관제장비 일반	2	2
비정상 및 비상 상황	항공기 비정상 · 비상 상황	항공기 비정상 · 비상상황 일반 사항(종류, 비행승무원 대응절차, 방어 기제, 항공교통관제 업무 영향 등)	4	6
	관제시설 우발상황	관제시설 우발상황 일반	2	
계				56

나) 한정과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7항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하기 위한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으로 교육대상은 공통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또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한 자로서 다른 업무 종류에 대한 한정을 취득하려는 자로 한다.

(1) 비행장관제 한정과정

(가) 학과교육

과목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비행장 관제 업무	관제탑 관제절차	허가중계석 관제절차	3	17
		지상이동항공기 관제절차, 기동지역 내 차량 통제절차, 항공등화 운영절차	6	

과목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절차		이륙항공기 관제절차, 착륙 항공기 관제절차, 시계비행 항공기 관제절차	6	
		저시정 관제절차	2	
장비 및 시스템	모의관제장비 운용	시뮬레이터 구성요소, 작동 절차, HMI 조작법	2	2
계				19

(나) 실기교육(모의관제훈련)

교육 내용	교육시간
1. 비행장관제 모의관제 (1) 이륙 항공기 분리(각종 출발제한사항 적용 등) (2) 착륙 항공기 분리 (3) 단일 활주로 운영 시 이·착륙 항공기 분리 (4) 교통장주 상 VFR 항공기, IFR 출·도착 항공기, 관제권 통과 항공기 간 분리 (5) 활주로 변경 (6) 필수정보 제공 (7) 저시정 절차 (8) 비정상 항공기 관리	30
계	30

※ 비고 : 모의 비행장관제 훈련은 현재 운영 중인 비행장관제탑 또는 가상의 비행장관제탑을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상의 비행장관제탑을 기준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두 본의 평행활주로로 구성된 비행장에 대해 별도의 관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감시관제(접근관제·지역관제) 한정과정

(가) 학과교육

과목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접근관제 업무 관제절차	접근관제소 관제절차	관할공항 비행절차, 접근 관제구역 내 교통흐름	4	12
		관제탑 협조절차, 지역관제소 협조절차	2	

과목	주제	교육 내용	교육시간	계
		출발 항공기 관제절차	2	
		도착 항공기 관제절차	4	
지역관제 업무 관제절차	지역관제소 관제절차	공항별 입출항절차, 고도배 정체계(FLAS)	2	10
		접근관제소 및 인접 지역관 제소간 협조절차, 관제섹터 간 협조절차, 항공로 진출입 협조절차, 군 협조절차	4	
		섹터별 관제절차	4	
장비 및 시스템	모의관제장비 운용	시뮬레이터 구성요소, 작동 절차, HMI 조작법	2	2
계				24

(나) 실기교육(모의관제훈련)

교육 내용	시간
1. 감시접근관제 모의관제 (1) 출발 항공기 관제 (2) 도착 항공기 관제 (3) 동시 종속·독립접근 운영 (4) 복행·회항·체공·시계비행 항공기 관제 (5) 활주로 변경 (6) 저시정 절차 (7) 비정상 항공기 관리	45
2. 감시지역관제 모의관제 (1) 출발 항공기 고도배정 및 고도분리 (2) 출발 항공기 종적분리 (3) 도착 항공기 종적분리(고도역전 상황 처리 포함) (4) 교차 항공로 항공기 관리 (5) VFR 항공기 관제 (6) 악기상 상황 관리 (7) 비정상 항공기 관리	45

계	90
---	----

※ 비고

1. 모의감시관제업무(접근·지역) 관제절차는 현재 운영 중인 접근관제소·지역관제소 또는 가상의 접근관제소·지역관제소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상의 접근관제소·지역관제소를 기준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복수의 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접근관제구역 및 관할 관제구에서 착륙, 출발, 통과, 교차하는 항공로로 구성된 공역구조와 더불어 인접 지역관제소 및 복수의 접근관제구역으로 구성된 관할구역에 대해 별도의 관제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한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교관 등의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적절한 수의 학과교관, 실기교관,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 교육훈련팀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학과교관

(1) 학과교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출 것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나) 교과목별 학과교관이 가져야 할 자격증명은 다음 표와 같다.

과목	자격증명 등
1. 법령 및 규정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공항 및 공역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3년 이상인 사람
3. 항공기 및 운항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3년 이상인 사람
4. 항공기상	자가용·사업용·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교육경력을 포함한다) 3년 이상인 사람
5. 인적요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의학, 심리학, 철학

	을 전공하고 인적수행능력 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장비 및 시스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교육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운영기준

(가)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학과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16명 이하로 할 것

나) 한정과정 실기교관(모의관제장비 교관)

(1) 한정과정 실기교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출 것

(가) 해당 한정과정에 맞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운영기준

(가) 한정과정 실기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한정과정 실기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6명 이하로 할 것

다)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

(1)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 다음의 기준을 갖출 것

(가) 자가용 이상의 조종사 자격증명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할 것

라) 초기교육 훈련팀장

(1) 초기교육 훈련팀장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출 것

(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가진 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을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2) 운영기준

(가) 초기교육훈련팀장은 라목의 교육평가 방법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초기교육 수료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초기교육의 일부 과정만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한 수료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마) 학과교관, 실기교관, 초기교육 훈련팀장은 매년 6시간 이상의 기량유지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 (2) 교수법
- (3)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 (4) 훈련절차

※ 비교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교통량, 혼잡도, 관할 비행장·공역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기교관, 교육훈련팀장의 관제 실무경력요건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요건

-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초기교육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자는 학과교육, 실기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 초기교육(한정과정)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의관제장비 갖추어야 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가등급 이상의 유효한 모의관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업무한정 과정별로 적합한 모의관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모의접근관제 장비와 모의지역관제장비의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 (다) 모의조종사석은 모의 관제석과 별도로 독립된 공간에 구성되어야 한다.
 - (라) 모의비행장관제장비는 국지관제석 1석, 지상관제석 1석, 허가중계석 1석, 감독석 1석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모의접근관제장비는 출발관제석 1석, 도착 또는 접근관제석 2석, 감독석 1석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모의지역관제장비는 레이더 관제석 3석, 감독석 1석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평가 방법

가) 학과시험 평가 방법

- 1) 학과시험은 과정별로 학과교육이 종료되기 전 1회 이상 종료 후 1회 실시할 것
- 2)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 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3) 학과시험 범위는 공통과정 학과교육 및 한정과정 학과교육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4) 학과시험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나) 실기시험 평가 방법

1) 실기시험은 각 실기교육 종료 후 1회 실시할 것

2) 실기시험은 다음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가) 관제석 장비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항공기를 식별하고 감시하면서 상황인식을 유지한다.

다) 비행자료 현시장비를 감시하고 갱신한다.

라) 운영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듣는다.

마) 적절한 허가, 지시 및 정보를 관련 항공기에게 제공한다.

바) 표준 관제용어를 사용한다.

사) 효율적으로 통신한다.

아) 표준분리치를 준수하여 항공기를 분리한다.

자) 적절하게 협조한다.

차) 관련 공항·공역의 운영절차를 정확하게 적용한다.

카) 잠재적인 충돌상황을 인지한다.

타)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파) 적절한 분리 방법을 선택하고 시행한다.

3)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2)의 모든 행동 평가기준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교통상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다)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2회의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5)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6)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교육기관의 명칭

나) 교육기관의 소재지

다)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라) 교육목표 및 목적

마)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바)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사)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아) 교육과정 운영(입과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자)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의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7)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마련: 전문교육기관의 초기교육에 실제 운항 중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직접 무선 교신하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교육생이 항공 항행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하여야 한다.(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 할 수 있다.)

8) 기록의 보관: 초기교육 훈련팀장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기록을 다음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항목	보관기관
1. 교육생의 자격, 교육 및 시험기록	영구
2. 학과교관, 실기교관, 교육훈련팀장의 자격, 정기교육(역량) 기록	학과교관, 실기교관, 교육훈련팀장이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5년간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훈련 과정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훈련 과정(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1조제7항2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으로 학과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가) 학과교육 : 학과교육의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한정의 종류	교육 내용	교육시간
비행장관제업무	가. 한정을 받으려는 비행장의 배치, 물리적 특성 및 시각보조시설 나. 관할 공역 구조 다. 적용 가능한 규칙, 절차 및 정보 출처 라. 항행안전시설	90

	마. 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그 사용 방법 바. 지형 및 주요 지형물 사. 항공교통의 특성 아. 당해 공항의 기상 현상 자. 비상 상황 및 수색구조 계획	
감시접근관제업무	가. 관할 공역 구조 나. 적용 가능한 규칙, 절차 및 정보 출처 다. 항행안전시설 라. 항공교통관제 장비 및 그 사용 방법 마. 지형 및 주요 지형물 바. 항공교통의 특성과 교통흐름	90
감시지역관제업무	사. 관할구역의 기상 현상 아. 비상 상황 및 수색구조 계획 자. 적용 가능한 항공교통감시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원리, 사용 및 제한사항 차. 적절한 지형 회피절차를 포함하여 항공교통관제 감시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	

나) 실무교육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실무교육은 직무교육훈련교관의 감독하에 기동지역 내 또는 공중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직접 무선 교신하면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만 한정한다.

한정의 종류	교육 내용	교육시간
비행장관제업무	취득하려는 한정의 권한에 따른 안전하고 질서 정연하고 신속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위협 및 오류에 대한 인지 및 관리를 포함해 필요한 기량, 판단력 및 역량	90
감시접근관제업무		180
감시지역관제업무		

※ 비고

1. 제81조제7항제1호에 따른 동일한 업무 종류에 대한 한정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교육시간의 최대 100분의 50까지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제81조제7항제1호에 따른 다른 업무 종류에 대한 한정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비정상상황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의관제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요건에 맞는 모의관제장비 교관 및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교관 등의 자격요건 및 운영기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적절한 수의 학과교관, 실무교관, 심사관, 교육훈련팀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직무교육 학과교관

(1) 직무교육 학과교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출 것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운영기준

(가) 학과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학과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16명 이하로 할 것

나) 직무교육 실무교관

(1) 직무교육 실무교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출 것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나)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해당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
- (다)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2) 운영기준
 - (가) 직무교육 실무교관의 강의는 1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나) 직무교육 실무교관 1명이 담당하는 교육생은 3명 이하로 할 것
- 다) 직무교육 심사관
 - (1)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춘 2명 이상의 직무교육 심사관을 보유할 것
 -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해당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무교관 경력이 있을 것
 - (나)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5년 이상의 관제 실무경력이 있을 것
 -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위탁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심사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2) 운영기준
 - (가) 심사관은 직무교육이 종료된 교육생이 라목의 교육평가방법을 충족하는 경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 이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 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춘 직무교육 훈련팀장을 1명 지정하여야 한다.
 - (1)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유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한정을 보유하고 해당 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심사관 경력이 있을 것
 - (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10년 이상의 관제 실무경력이 있을 것
- 마) 직무교육훈련 모의관제장비 훈련 교관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갖출 것
 - (1)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해당 시설에서 2년 이상의 관제 실무경력이 있을 것
 - (2)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2년 이상의 실무교관경력이 있을 것
- 바)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
 - (1) 자가용 이상의 조종사 자격증명 소지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

지자
사) 학과교관, 실무교관, 심사관, 직무교육 훈련팀장(모의관제훈련장비를 운영하는 경우 모의관제장비 훈련 교관 및 모의관제장비 모의조종사를 포함한다.)
은 매년 6시간 이상의 기량유지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학습과정에 대한 기본원리
- (2) 교수법
- (3) 직무에 대한 임무, 권한, 책임
- (4) 훈련절차

※ 비교 :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교통량, 혼잡도, 관할 비행장·공역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실무교관, 심사관, 교육훈련팀장의 관제 실무경력 요건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및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요건

-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학과교육, 실무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 (2) 모의관제장비를 활용하여 직무교육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의관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가등급 이상의 유효한 모의관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업무한정 과정별로 적합한 모의관제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모의접근관제 장비와 모의지역관제장비의 경우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 (다) 모의조종사석은 모의 관제석과 별도로 독립된 공간에 구성되어야 한다.
 - (라) 모의비행장관제장비는 국지관제석 1석, 지상관제석 1석, 허가중계석 1석, 감독석 1석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마) 모의접근관제장비는 출발관제석 1석, 도착 또는 접근관제석 2석, 감독석 1석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바) 모의지역관제장비는 레이더 관제석 3석, 감독석 1석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평가 방법

가) 학과시험 평가 방법

- 1) 학과시험은 과정별로 학과교육이 종료되기 전 1회 이상 종료 후 1회 실시할

것

- 2) 교육생은 총 학과교육 시간의 100분의 85 이상을 이수토록 할 것
- 3) 학과시험 범위는 직무교육 학과교육 과목에 따라 실시할 것
- 4) 학과시험 합격기준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할 것

나) 실무시험 평가 방법

- 1) 실무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할 것
- 2) 실무시험은 다음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가) 관제석 장비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항공기를 식별하고 감시하면서 상황인식을 유지한다.

다) 비행자료 현시장비를 감시하고 갱신한다.

라) 운영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듣는다.

마) 적절한 허가, 지시 및 정보를 관련 항공기에게 제공한다.

바) 표준 관제용어를 사용한다.

사) 효율적으로 통신한다.

아) 표준분리치를 준수하여 항공기를 분리한다.

자) 적절하게 협조한다.

차) 관련 공항·공역의 운영절차를 정확하게 적용한다.

카) 잠재적인 충돌상황을 인지한다.

타) 업무 우선순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파) 적절한 분리 방법을 선택하고 시행한다.

- 3) 실무시험 합격기준은 2)의 모든 행동 평가기준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교통상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다) 학과시험 및 실무시험 불합격자는 해당 과목 교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추가교육을 한 후 2회의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2회의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

- 5) 교육계획: 교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한 최대 교육인원을 포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할 것

- 6)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교육기관의 명칭

나) 교육기관의 소재지

다) 항공종사자 자격별 교육과정명

- 라) 교육목표 및 목적
 - 마)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조직 및 인원과 관련된 임무
 - 바) 교육생 정원(연간 최대 교육인원)
 - 사) 시험시행 횟수, 시기 및 방법
 - 아) 교육과정 운영(입과 및 수료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자) 수료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차)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
 - 카) 그 밖의 전문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7)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마련: 전문교육기관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직무교육 교육생이 항공 항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할 것(해당 항공교통업무시설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 할 수 있다.)

8) 기록의 보관: 훈련팀장은 제공하는 교육에 대한 기록을 다음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항목	보관기관
1. 교육생의 자격, 교육 및 시험기록	영구
2. 학과교관, 실기교관, 심사관, 교육훈련팀장의 자격, 정기교육(역량) 기록	학과교관, 실기교관, 심사관, 교육훈련팀장이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5년간

별표 31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의2	증명취소 또는 업무정지(180일)
--	----------------	--------------------

별표 47의 납부자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14호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란 제15호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13.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자	
가. 학과시험	9만2천원
나. 실기시험	11만7천원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제6호 중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신청자격란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제사 []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항공안전법」 제38조제4항·제112조제4항”을 “「항공안전법」 제38조제5항·제1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 중 “지방항공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제81조제7항제2호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대한 한정을 말한다)을 받은 사람 및 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항공교통관제시설 내 근무석별 항공교통관제 업무 한정을 발급한 경우, 한정 받은 근무석별 항공교통관제 업무에 한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업무 범위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87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2. 제81조제7항제2호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

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3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180일 이내에 관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발급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유효한 자격증명의 한정을 포함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효한 자격증명의 한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 중인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경우 개정규정 제104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또는 개정규정 제22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⑥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5조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의 한정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조(기량의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시행일 당시 기량의 정기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심사의 만기일은 2027년 11월 30일로 한다.

제4조(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 하에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 또는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4 제1호가목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을 인정한다.

(앞 쪽)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

본인은 년도 제 차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의 학과시험/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작성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작성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① 신청인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영문			
③ 주소	한글	우편번호(-)		④ 전화 번호
	영문			⑤ E-MAIL
⑥ 응시자격명 (한정사항)				
⑦ 종류구분	항공기종류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항공우주선		
	경량항공기종류	[] 조종형비행기 [] 체중이동형비행기 [] 경량헬리콥터 []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슈트		
	정비분야	[]전자·전기·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종류 및 수행방식	[]비행장관제업무 []감시접근관제업무 []감시지역관제업무		
⑧ 등급	[]육상([]단발 []다발) []수상([]단발 []다발) []활공기([]상급 []중급)			
⑨ 응시과목	학과시험:			
	실기시험: []구 술 []실 기			
⑩ 면제 과목				
⑪ 면제 근거	[]관련자격 취득 []일부과목 합격 []지정전문교육기관 수료 []경력 소지 []기타			
⑫ 응시번호	학과*	실기*	⑬ 구 비 서 류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1부 / 과목합격증 각 1부 연습허가서 1부
⑭ 시험장소			⑮ 시험일시	

자르는 선

⑥ 응시자격명	응 시 표		
⑭ 시험장소	⑮ 시험일시		
⑫ 응시번호	학과*	실기*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영문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정보	성	한글	생년월일
	명	영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자격	☐ 운송용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		
자격번호		국적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정보	등급	유효기간	~

「항공안전법」 제38조제5항·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7항에 따라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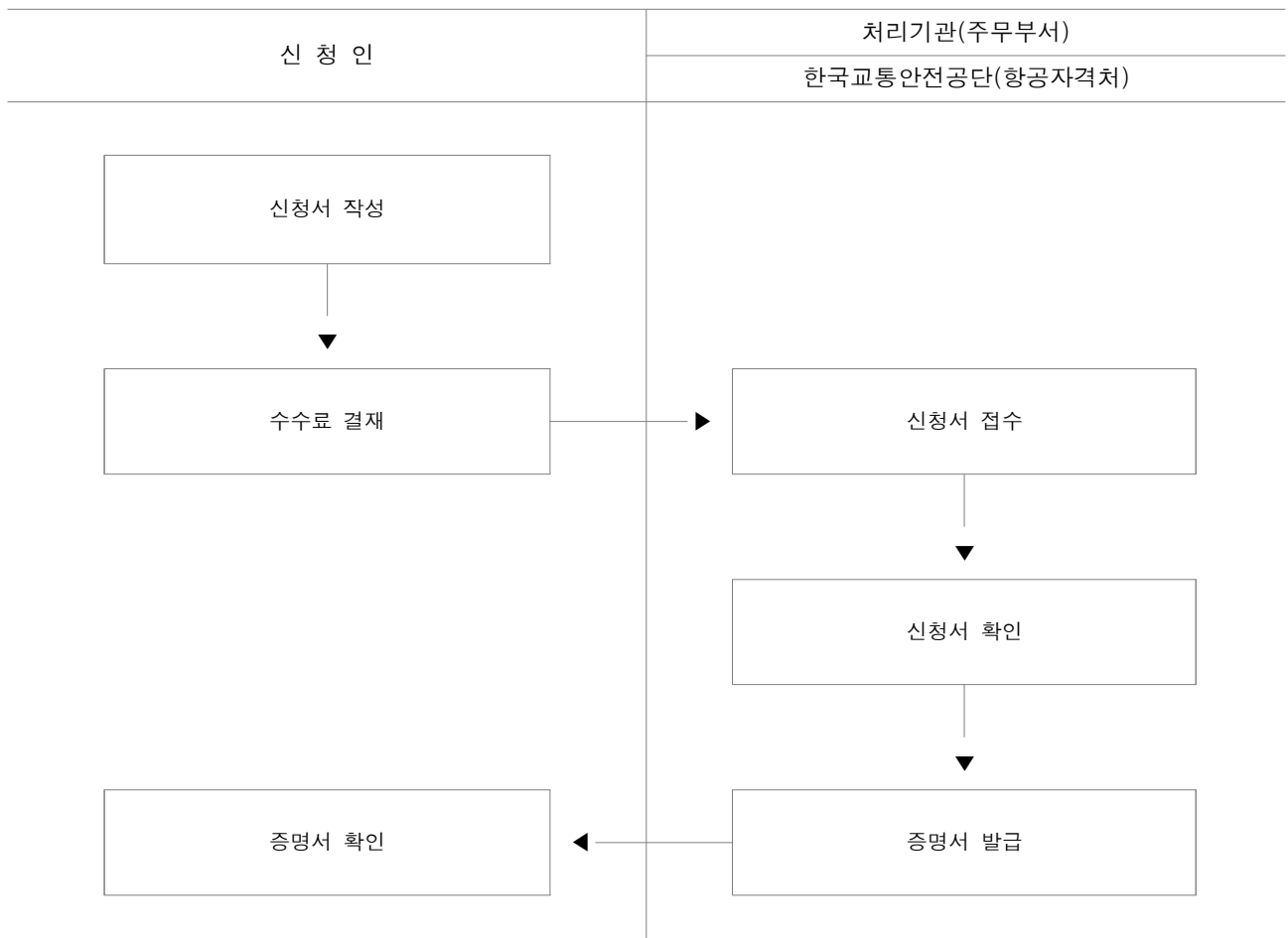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한함)	수수료
발급담당자 확인사항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발급일자 기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 에서 정한 수수료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누락된 사항과 오류가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이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02-3151-1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의2라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비행장관제업무를 보조하는 허가중계업무 및 비행자료관리업무</u> <u>2. 접근관제업무 또는 지역관제업무를 보조하는 비행자료관리업무</u>
<u><신 설></u>	<u>제10조의4(항공교통관제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26의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u> <u>1. 비행장관제탑: 법 제2조제5의2호가목에 따른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인천 · 김포 · 제주 · 여수 · 양양 · 무안 · 울산 · 울진 · 정석 · 태안관제탑</u> <u>2. 접근관제시설: 법 제2조제5의2호나목에 따른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u>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시험(이하 “자격증명시험”이라 한다) 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심사(이하 “한정심사”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략)

· 제주 · 김해 접근관제소, 울진울산 접근관제실, 여수도착관제실

3. 지역 관제시설: 법 제2조제5의
2호다목에 따른 지역 관제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대구

- 인천지역 관제소

제76조(응시원서의 제출) 법 제38
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38조제2항 및 제3
항-----

----- . 다만,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경우 ----

1. ~ 3. (현행과 같음)

제87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시시험의 전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를 제출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 제7호의2 -----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임시 자격증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38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에 따라 실기 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③ 제75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38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사·항공정비기능장·항공기사 또는 항공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을 면제한다.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88조(자격증명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

-----.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4항제2호 -----

-----.

③ ----- 법 제38조제4항제4호-----

-----.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의 한정(임시 자격증명의 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9조(한정심사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4항제1호-----

② 법 제38조제4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④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를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신 설>

-----.

③ 법 제38조제4항제3호-----

-----.

④ 법 제38조제4항제5호-----

-----.

⑤ 법 제3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 운영 개시 이후 1년 이내에 한정심사

<신 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
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1.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명을 가진 사람

2.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과
동일한 업무의 종류 및 수행
방식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에
서 자격증명의 한정을 취득하
고 3년 이상의 해당 항공교통
관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을 위한 직무교육훈련 과정
중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90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① 법 제38
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훈련 실
적 및 업무수행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훈련 실적

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
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
와 관련된 법규,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는 필수 교육

훈련의 이수 실적

나.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
의 관제기술, 비상절차 수
행능력 등에 대한 업무 역
량 평가 결과

2. 업무수행 실적: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날부
터 기산하여 그 이전 180일까
지의 사이에 60시간 이상 관
제한 경험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
부장은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량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
다.

1. 정기 심사: 제1항제2호에 따
른 업무수행 실적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자격증명의 한정
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또는 종전 정기 심사의 유
효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심사: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항공

교통관제사로서 항공교통관제 시설의 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수시로 실시

가.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나.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자격증명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증명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중 한정의 효력을 회복하려는 사람

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수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유효기간은 심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이내에 정기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항공전문의사는 신청서의 허위 기재 등 <u>법 제43조제4항</u>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u>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량 심사의 세부 평가 항목, 기록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⑥ <u>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기량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제93조(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법 제43조제5항</u> ----- ----- ----- ----- ----- -----
---	--

항공신체검사의 결과가 별표 9
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항
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
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생략)

3. 제229조제2호에 따른 항공교
통관제기관(이하 “항공교통관
제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

② · ③ (생략)

제103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
의 재발급) ① 운항승무원, 조종
연습생,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법 제47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2조(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의
신청 등) ① -----

-----.

1. 법 제35조제7호의2--- 전문
항공교통관제사 -----
--

2. (현행과 같음)

3.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려는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제8
1조제7항에 따른 유효한 자격
증명의 한정을 보유한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항공신체검사증명서 등
의 재발급) ① -----
-----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
공교통관제사 -----

사람(이하 “관제연습생”이라 한다)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이하 “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명서등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생략)

⑥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훈련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새로운 훈련운영기준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의 장이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
경하는 훈련운영기준을 적용하
려는 날의 15일전까지 별지 제5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통교통부장관

⑦ _____

8호의3서식의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를 적어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지방항공청장은 제7항에 따른 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훈련운영기준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⑨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지정전문교육기관이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 (생략)
2.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⑩ (생략)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토교통부장관 -----
-----.

⑧ 국토교통부장관-----

-----.

⑨ 국토교통부장관-----

-----.

1. (현행과 같음)
2. -----
----- 국토교통부장관 -----

⑩ (현행과 같음)

제134조(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93조(관제의 종결) 법 제67조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끝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비행장에 착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5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한정 등)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한정을 받은 사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93조(관제의 종결) -----

--- 항공교통관제 업무-----

-----.

제225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수행 요건 등) ① -----
-- 항공교통관제시설-----

---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명-----

-----.

다만,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2. 제238조의 항공교통업무 우
발계획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군 항
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
은 사람이 군용비행장에서 항
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
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항공
교통관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한 날이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업무의 한정의 효력이 정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
공교통관제업무에 관하여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을 받
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한정에 관한 사항과 제2
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및 항
공기탑승훈련 등의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삭 제>

<삭 제>

② ----- 자격증명의 --

-- 항공교통관제시설-----

-- 자격증명의 한정의 -----
----- . <단서 삭제>

③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
부장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
성 및 기량 유지를 위해 별표 1
2 제8의2호 전문항공교통관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제226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대
상 등) (생 략)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영역은 법

사과정 지정기준에 따른 교육훈
련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그 체
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교육훈련
체계를 최초로 마련한 경우

2. 정기검사: 매년 1회

3. 수시검사: 교육훈련체계가 변
경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
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⑤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
부장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소속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양
성 및 기량 유지를 위해 항공기
탑승훈련 등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6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대
상 등) (현행과 같음)

제227조(항공교통업무 제공 영역
등) ① 법 제83조제5항-----

제83조제1항에 따른 비행장 ·
공항 및 공역으로 한다.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비행
정보구역 내의 공해상(公海上)
의 공역에 대한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은 항공기의 효율적인 운항
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서 승인한 지역별 다자간협정
(이하 “지역항행협정”이라 한
다)에 따른다.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
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업무: 제1항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접근관제업무: 관제공역
안에서 이륙이나 착륙으로
연결되는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
통관제업무

-----.

② 법 제83조제5항-----

-----.

제228조(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① 법 제83조제5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1. 항공교통관제 업무: 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비행장관제
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지역관
제업무

나.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위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에 제공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로서 접근관제업무 외
의 항공교통관제업무(이동
지역 내의 계류장에서 항
공기에 대한 지상유도를
담당하는 계류장관제업무
를 포함한다)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교
통관제업무로서 접근관제
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외의 항공교통관제업무

2. 3. (생 략)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
분)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
공교통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 략)

2. 항공교통관제기관: 관제구 ·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
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
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2. 3. (현행과 같음)

제229조(항공교통업무기관의 구
분) 법 제83조제5항-----

-----.

1. (현행과 같음)

2. -----
----- 항
공교통관제 업무-----

기관	--
제230조(항공교통관제업무의 수행) ① <u>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한다.</u>	제230조(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수행) ① <u>항공교통관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u>
1. <u>항공기의 이동예정 정보, 실제 이동사항 및 변경 정보 등의 접수</u>	1. <u>항공기의 예정된 이동 또는 이에 따른 변동 정보, 각 항공기의 실제 진행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 등을 접수</u>
2. <u>접수한 정보에 따른 각각의 항공기 위치 확인</u>	2. <u>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기 상호간 상대적 위치를 결정</u>
3. <u>관제하고 있는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와 항공교통흐름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허가</u> 와 정보 제공	3. ----- ----- ----- <u>허가</u> 를 발부하고 관련 정보를 <u>제공</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1조(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u>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관제를 받는 항공기는 항상 하나의 항공교통관제기관이 관제를 제공하여야 한다.</u>	제231조(항공기에 대한 관제책임 등) ① <u>법 제83조제5항</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	제232조(항공교통업무기관과 항

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서 정한 항공기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33조(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 정상적인 운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항공기의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행위(이하 “잠재적 위험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을 관련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34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비상상황(불법 간섭 행위를 포함한다)에 처하여 있거나 처하여 있다고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상

공기 소유자등 간의 협의 등)

① ----- 법 제83조제5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33조(잠재적 위험활동에 관한 협의) ① 법 제83조제5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4조(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① ----- 법 제83조제5항-----

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불법간섭을 받고 있음을 안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불법간섭 행위에 관한 사항을 무선통신으로 질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무선통신을 통한 질문이 불법간섭을 악화시키지 아니한다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235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표류항공기(계획된 비행로를 이탈하거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미식별항공기(해당 공역을 비행 중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식별되지 아니한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35조(우발상황에 대한 조치)
법 제83조제5항-----

-----.

1. · 2. (생략) 제236조(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라 관할 공역 내의 항공기에 대한 요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은 관할 공역 밖에서 피요격항공기를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237조(언어능력 등) ① <u>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4항</u>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를 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생략)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u>법 제83조제4항</u>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 지원업무가 예상할 수 없	1. · 2. (현행과 같음) 제236조(민간항공기의 요격에 대한 조치) ① ----- -- <u>법 제83조제5항</u>----- ----- ----- -----. 1. ~ 6.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83조제5항</u>-----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7조(언어능력 등) ① <u>항공교통관제사 및 전문항공교통관제사는 법 제83조제5항</u>-----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8조(우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 <u>법 제83조제5항</u>----- -----
--	--

는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제2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행정보업무는 항공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수행한다.

② 같은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와 비행정보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제241조(비행정보의 제공) 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1. ~ 12. (생략)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

-----.

② (현행과 같음)

제240조(비행정보업무의 수행 등)

① 법 제83조제5항-----

-----.

② -----
항공교통관제 업무와 -----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
-----.

제241조(비행정보의 제공) ① 법

제83조제5항-----

--. -----

-----.

1. ~ 12.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83

조제4항에 따라 특별항공기상
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
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
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
게 전파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제228
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보업무
는 다음 각 호의 항공기에 대하
여 수행한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항공
교통업무의 대상이 되는 항공
기

2. 3. (생략)

제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
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
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구조업무를 수
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44조(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

조제5항-----

-----.

③ (현행과 같음)

제242조(경보업무의 수행) -----

-----.

1. 법 제83조제5항-----

--

2. 3. (현행과 같음)

제243조(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① -----
----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44조(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
통업무기관은 항공기가 제243
조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주변에서 비행하고 있
는 다른 항공기에 대하여 가능
한 한 신속하게 비상상황이 있
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5조(비상항공기의 주변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통보)
법 제83조제5항

-----.

다만, 항공기가 불법 간섭을 받
고 있음을 안 경우, 해당 항공기
가 비상상황에 대해 먼저 언급
하거나 이러한 언급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아니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닌 한 무선통신에서

제246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에 대하여 최신의 기상상태 및 기상예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비행장 주변에 관한 정보, 항공기의 이륙상승 및 강하지역에 관한 정보, 접근 관제지역 내의 돌풍 등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는 기상현상의 종류, 위치, 수직 범위, 이동방향,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상관측기관·항공운송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비행장설치자, 항행안전시설관리자, 무인자유기구의 운영자, 방사능·독성 물질의 제조자·사용자와 협

비상상황의 성격에 대하여 언급
해서는 아니 된다

제246조(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 ① -----
-- 법 제83조제5항-----

-----.

② ----- 법 제83조제5항-----

--- 기상서비스제공기관·항공운송사업자 -----
-----.

③ ----- 법 제83조제5항-----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250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규정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1. ~ 6. (현행과 같음)

제250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35조제7호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

제295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

----- 지방항공청장-----.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제2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자의 명단 및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항공청장-----

-----.

④ 지방항공청장-----

-----.

⑤ -----

--- 지방항공청장 -----

-----.

⑥ -----

----- 지방항공청장 -----

-----.

⑦ <u>국토교통부장관</u>은 1년마다 경량항공기 지정전문교육기관 이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⑦ <u>지방항공청장</u>----- ----- ----- -----. ⑧ (현행과 같음)
---	--